漁港개발과 漁

나름대로 名分과 妥當性있지만

國家的次元에서 理解와 協助를

어항인의 한결같은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항과 항간의 거리, 이른바 항간거리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정도로 어항개발을 하는 일이다.

그 까닭은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항이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 때문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항간거리는 대체로 약 33km - 이웃 일본의 11km와 비교한다면 무려 3배나 먼 거리인 셈이다.

이는 쉽게 말해서 출어어선이 태풍이나 폭풍같은 악천후를 만났을 때 대피할 어항을 찾아 자그마치 80리를 헤매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산청을 비롯한 관계당국과 뜻있는 어항인들은 이러한 전근대적인 어항의 기능과 역할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을 위해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어항투자규모를 늘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기도 하고, 불합리한 어항관련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는 등 어항개발을 수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로 삼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 연초 수산청은 지속적인 어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행돼 왔던 어항지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키로 하고 이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우선 제1종 어항의 경우 그동안 동일 행정구역내 제1종 어항이 있을 경우 신규지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2개 이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제1종 어항과의 해상거리가 10km이내일 경우에만 신규지정을 할 수 없도록 어항지정에 관한 규정을 크게 완화했다.

또한 제3종 어항의 항간거리도 단축, 20km 안팎이 되게 함으로써 어민의 안전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業權

이와함께 수산청은 오는 '92년부터 2천1년까지 총 2조5,680억원을 투자하여 제1·3종 어항 249개항을 신규 지정하는 등 모두 505개 어항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의욕적인 어항개발 청사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어항개발현장에서 어항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우려할만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부 어민들이 어항지정을 기피하며 어항개발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대체로 이유는 한 가지로 귀착되었다.

어항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개발할 경우 매립 혹은 준설로 인하여 구역내 어업권이 타격을 받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어항개발을 하는데 따른 어업권 시비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항공사 현장에서 끊임없이 어민과의 마찰이 빚어져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적당한 보상과 양보로 타협이 이루어져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가 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법에 근본적인 시정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같다. 적당한 양보와 타협은 과거와 같이 어항개발규모가 비교적 작은 시절에나 통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인 어항의 개발이 필수적이고, 그 규모도 과거와는 달리 크고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어항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어업권 분쟁을 언제까지나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수 만은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의 해결방법은 어항개발의 주체인 수산당국과 어업권자인 어민이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낼 수 있느냐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

어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익적인 성격이 짙다고는 하나 어업권은 분명히 엄연한 사유재산권이고, 더군다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공익을 빌미로 함부로 제한받거나 침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수산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기간산업의 확충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선 최소한의 사유재산권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양측 모두 각기 나름대로 명분과 주장에 타당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자칫 끝없는 평행선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논쟁의 평행선 뒤엔 뜻하지 않은 수산업 낙후라든지, 수많은 어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양측은 모두 사태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나 최상의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적하는 바가 모두 건전한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무리한 보상을 자제하는 어민에게 다른 유사한 어업권을 주선해 주는 식으로 서로 뜻과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이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일성 싶지만도 않다.

다만 이 기회에 확실히 짚어둘 중요한 사실은 타협에 대한 대원칙 만큼은 꼭 정해 놓자는 것이다. 원칙없는 타협이란 자칫 순간적인 감정이나 주관에 휩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상호 신뢰를 합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리고 어항개발의 중요성과 수산업 발전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대책과 원칙은 하루 빨리 세워질수록 좋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공연한 명분싸움에 수많은 어민과 수산업이 희생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